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1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2020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 조사」에서 “지자체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중의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2020.8월)에 따라 공중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 개정에 대한 감사원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 계획」(2020.8월)에 따라 공중의무 규정을 삭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중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 ----- ----- <u>체결하여야</u>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결과 :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 본 조례안은 감사원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중의무 규정이 삭제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2020.8월, 행정안전부) 1부.

붙임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I. 정비 배경 및 문제점

1.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 (공증)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 공증) 지자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협약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
 - (방식) ①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거나, ②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 방식
 - (효력 - 진정성립 추정)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공증인법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민간위탁 시 공증의무)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다수 존재

< 00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2. 정비배경 및 문제점

- (정비배경)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는 방안 마련 통보(감사원)
- (불필요한 절차·비용)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함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摺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에서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들 3,802건 중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69%(2,611건)에 달함
- (공증비용 전가)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
 -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간위탁 사업 1,191개 중 약 36%(434개)의 사업에서 수탁자가 공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II.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정비방향

1 정비대상 자치법규

- **(공증의무 규정)**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 대상으로 함
 - ※ 수탁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거쳐 공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0000시 00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수탁자의 경비부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1. ~ 7. (생략)

-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면서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규정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대상으로 함

< 00군 00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략)

< 0000시 00구 00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협약체결 등) ① 00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2 정비방향

- **(규정 삭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삭제**
 - ⇒ 개별 사안별로 공증실시 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정도 판단
 - ※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 필요

현행	예시안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수탁자의 경비부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예시안
제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략)	제0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임의규정)** 일괄적·의무적 공증 실시가 아닌 **필요한 경우 개별적·임의적 공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

현행	예시안
제0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략)	제0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